

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 건축물의 용도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
- 옥상녹화 기준(안 제6조)
- 지원 대상(안 제7조)
- 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밀집된 도시의 토양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있었음.

- 최근 건축물의 옥상을 녹지공간 및 반사열 흡수원 대응책으로 활용하려는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,
- 옥상녹화 효과는 토양생태계 복원, 건축물 상층부 단열효과, 도시열섬현상 완화, 우수유출 일시 완화, 공기 정화, 경관 향상, 휴식 공간 제공 등의 장점이 있음.
- 서울특별시, 강원도,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옥상녹화 보급 및 활용을 도시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충청북도도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7조	지원대상
제2조	정의	제8조	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
제3조	도지사의 책무	제9조	옥상녹화 유지·관리
제4조	적용범위	제10조	시설점검
제5조	옥상녹화 활성화 사업	제11조	준용
제6조	옥상녹화 기준		

- 안 제4조(적용범위)
 - 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- 안 제5조(옥상녹화 활성화 사업)
 -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
 -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·보급

-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안 제6조(옥상녹화 기준)

- 옥상면적, 각종 설비나 유지·관리 조건,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 확보

○ 안 제7조(지원대상)

- 도 및 시·군 소유 건축물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
-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

○ 안 제8조(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)

-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 이상 사업(최소면적 30제곱미터)
-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
-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

○ 안 제9조(옥상녹화 유지·관리)

-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,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.

- 또한 녹지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조
례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